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27
------------	----

제출일자 : 200

제출자 : 달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사업의 범위)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경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달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

3. 주요골자

- 경영사업의 범위(안 제3조)
 - 관광자원의 개발 및 조성사업
 -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이용에 관한 사업
 - 주차장 관련사업
 -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 주택공급사업
 - 문화·스포츠·레저사업의 개발 및 조성사업
 -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 사업
- 세입의 범위(안 제5조)
 - 경영사업 수익금
 - 일반회계 전입금

-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
- 지방채 등의 차입금
- 기타 특별회계 수입금

- 세출은 경영사업비와 그 부대경비, 지방채등 차입금 등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함(안 제6조).
- 특별회계 자금 중 경영사업 수익금과 그 적립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 세계 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음(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3. 5. 10 ~ 5. 30(20일간) - 의견 없음
- 예산 수반 사항 : 있음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에서 선정 추진하는 경영사업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영사업”이라 함은 제3조 사업 중 달성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유형) 특별회계에서 선정 추진할 수 있는 경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의 개발 및 조성사업
2.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이용에 관한 사업
3. 주차장 관련사업
4.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5. 주택공급사업
6. 문화·스포츠·레저사업의 개발 및 조성사업
7. 위 각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5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경영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또는 시비 보조금, 지방채 등의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경영사업비와 그 부대경비, 지방채등 차입금 등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제7조(회계의 운영) ①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 자금중 경영사업 수익금과 그 적립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세계 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